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6. 26 선고 2024가단10089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승낙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6. 12.

판 결 선 고 2024. 6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. 6. 27. 접수 제689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